

산재근로자 직업훈련

● 사업목적

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**재취업 및 창업 촉진**

● 지원대상

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~제12급 산재장해인

※ '21.2.1.부터 급여 신청기간이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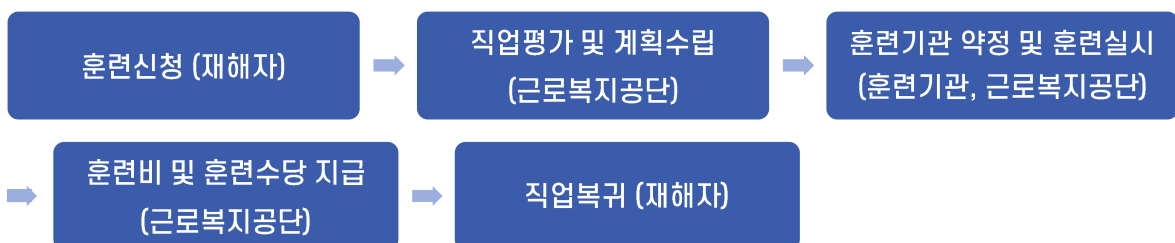
● 지원내용

산재장해인(제1급~제12급)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·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**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**(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)

직업훈련비용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**훈련비 전액**, 그 외 훈련은 **1인당 6백만원 한도**

직업훈련수당 **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**
(예산사업은 최저 임금액의 1/2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)
※ 출석률이 80%이상인 경우 훈련을 받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

● 사업추진체계



● 지원문의

-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: 1588-0075

-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: www.kcornwel.or.kr